



대한한돈협회



수신 임원 및 지부(회)장
(경유)

제목 농식품부·환경부 가축분뇨 합동점검계획 안내

1.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지부(회)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농식품부·환경부는 오는 6월 30일 까지 「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련 합동지도·점검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, 합동지도·점검 세부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지부(회)에서는 회원농가에게 해당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점검일시 : 2025년 4월 1일 ~ 6월 30일(91일)

나. 주요점검대상 :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, 가축분뇨 관련업체 등

다. 주요점검사항

- 1)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처리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
 - 가축분뇨 퇴비·액비 농경지 야적방치 행위 등
- 2) 배출시설·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 없이 규모 증설 행위
 -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행위
 - 액비살포기준 미준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
 - 관리일지(퇴·액비관리대장) 및 검사기록(퇴·액비 및 정화방류) 미작성·미보관

붙임.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점검·지원 계획. 끝.

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



담당자 : 김하제 과장 / 연락처 : 02-581-9754 / 팩스 : 02-581-9768 / 이메일 : rlagkwp@naver.com

시행 : 정책기획부-310-2(2025.04.01) / 대표번호 : 02-581-9751 / <https://koreapork.or.kr/>

우 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, 3층

□ 추진 목적

-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점검
 - * '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·점검규정(환경부훈령 제1670호)'

□ 점검기간('25.상) : 2025. 4. 1 ~ 6. 30(91일)

- 원칙적으로 점검기간 내 실시하되, 재해·가축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점검 일정 및 지역 조정 가능

□ 점검 대상

-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, 가축분뇨 관련업체(재활용업, 수집·운반업, 처리업, 액비유통센터, 자원화시설, 공공처리시설 등) 등
 - * 최근 2년간 지도·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의 경우 점검에서 제외 가능. 단, 최근 2년간 지도·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점검 대상 포함
 - 대규모 시설,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, 주요하천(공공수역) 인접 시설
 - 무허가 축사 시설, 지자체 간 경계지역 악취 등 발생 시설
 -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(돼지분뇨),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업자,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경우 1/6이상 점검

< 중점 지도·점검 사항 >

□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처리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

- 가축분뇨 또는 퇴비·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, 농경지 등에 야적·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입(유입 우려 포함)하는 행위
 - * 가축분뇨 또는 퇴비·액비의 처리의무 미이행에 해당(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위반)

< 야적 퇴비 부적정 보관 사례 >



□ 배출시설·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가축분뇨·퇴비·액비·소화액 등의 축사 주변 유출, 관리일지 미작성 및 미보관, 퇴비장 내 빗물·지표수 유입,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등 배출시설·처리시설 운영 관리기준 위반 행위
 - *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미준수에 해당(제17조제4항 위반)

□ 배출시설·처리시설의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리에 관한 사항

-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·액비를 생산·사용하거나 경종 농가 등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
 - * 원칙적으로 자원화시설에서 발효되지 않은 퇴비·액비 제공은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해당(제17조제1항제4호 위반)
- 액비의 살포지 외 장소에서의 살포 또는 살포기준 미준수, 퇴비·액비 투기, 방류수질기준에 맞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등
 - * 퇴비·액비의 무단 살포, 방류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 무단 배출은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해당(제17조제1항5호 내지 제7호 위반)

□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에 관한 사항

-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 여부 및 수질검사 실시
 - * 「배출허용기준(폐수)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(환경부고시 제2007-107호, '07.7.6)」중 청정지역에 설치·운영 중인 정화시설의 방류수 채취 실시